■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 20.>

부 산 구 치 소

수신자 강성준 귀하 (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13633356	**접수일** 2025. 01. 09.

청구 내용	2024년 10월 부산구치소에서 생산한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참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의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내용	1. 부산구치소 과밀수용관련 협조요청(공문) 2. 첨부파일 참조

공개 일시	2025. 01. 13. 09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0원	0원	0원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부산구치소장

교도 김재현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수연

협조자

시행 수용기록과-433(2025. 01. 13.)

우 47016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전화번호 051-309-5501 팩스번호 051-324-5509 / kjhpantera84@naver.com / 공개 구분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